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병역법 제79조의2*(적금의 정부지원)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
일준비지원 사업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으로 1%이자지원과 매칭지원금을
통합하기 위해 1%이자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매칭지원금**이 자산형성프
로그램 추진으로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
소요를 반영하기 위함.

* 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
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
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**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: 장병내일준비적금의 '23. 1월 납입액부터 매칭비율에
따라 원리금(원금+이자)의 71%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

3. 주요내용

가. 1퍼센트 이자지원 관련 조항 삭제(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제

①항 제1호)

나. 적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(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
원) 제①항 제2호)

☞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지원비율을 71%에서 100%로 개정

다. 부칙 제1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, 제2조에는 기존 납입액에
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적용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병역법, 조세특례제한법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2024년 예산에 반영 완료)
- 다. 기 타 : 1) 신·구 조문 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3. 10. 20. ~ 11. 28.) 또는 단축 의뢰

대통령령 제 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 "장병내일준비적금"이라 한다)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~~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~~

~~1.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~~

입금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 ~~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1~~ →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~~가.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~~

~~나.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~~

~~다.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.~~

~~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정하는 이자~~

-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.
-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[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(이하 "대체복무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]를 제출해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

항은 법무부장관·국방부장관·병무청장·경찰청장·소방청장·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영 시행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 "장병내일준비적금"이라 한다)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1.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가.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 나.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다.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정하는 이자 ② (생략)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~ (중략) ~ 제출해야 한다. ④ (생략)	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 "장병내일준비적금"이라 한다)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1.(삭제) 2.(삭제) ②③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(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